

엔젤투자 세제지원 제도 개요

< 2018.1.23 기준 >

- (소득공제) 개인투자*에 대한 소득공제 제공 (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)
 - *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의 신주 인수(3년간 보유의무)
 - (공제 신청자)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개인투자자
 - (투자대상기업 자격요건) 벤처, 기술성 우수 창업초기기업 등
 - 자격요건 적용기준 변경 : 투자 시점이 아닌 공제 신청시(투자 3년내) 적격성* 판단 ('18.1.1이후 투자부터 적용)
 - * 기존에는 투자 시점에서 피투자 기업이 업력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, 벤처기업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투자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
 - (소득공제율)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% 한도에서
 - ① 개인이 창업투자조합,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
→ 출자금액의 10% 공제
 - ②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
→ 금액 구간별 30 ~ 100% 공제
 - (신청기간) 투자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선택

| 시점 | | '97 | '14.1월 | '16.2월 | '18년 확대(안) |
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대상기업 | 전체업력 | ① 벤처기업 | | | ⑤ (추가) 기술우수(②+③+④)기업에 클라우드펀딩 통한 투자 |
| | 3년미만 | - | ② 기술성 우수*기업 * 중진공, 기보 평가 | ③ R&D 지출년 3천만원 이상 | ④ (추가) TCB 평가* 우수기업 * 기술신용평가(금융위) 5등급 이상 |
| 공제율 | | 10~30% | 50%(5천만원이하) 30%(5천만원초과) | 100% (1.5천만원 이하) 50% (1.5천만원 초과) 30% (5천만원 초과) | 100% (3천만원 이하) 70% (3천만원 초과) 30% (5천만원 초과) |
| 시점 | | '97 | '14.1월 | '15.1월(현행) | '18년 1월 1일 ~ |

* 확대된 공제율은 '18.1.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, 대상추가 (④, ⑤)는 시행령 개정 중

- (양도세 비과세)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(창업 5년 이내 또는 벤처 전환 3년 이내)에 투자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양도소득 비과세 (조세특례제한법 제 14조)
 - * 개인이 창업투자조합, 창투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양도소득 비과세 되나 대상 기업 등 요건이 일부 상이 (조세특례제한법 제 14조 참조)